제 2 호
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다산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22년 01월 26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최종신고 주소	신고사항
윤**	윤** 1968-05-06	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평리6길	재등록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제3항).

(담당자 : 최다운 문의전화 : 054-950-7731)

2021년 12월 30일

다산면장 인